

파주시 공고 제2026-1911호

##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3조)

### 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7월 2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자치협력과 평화협력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2971/ 팩스 031)940-2979 / 이메일 sora7982@korea.kr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